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37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 박수영ㆍ유상범ㆍ인요한

조정훈 · 송석준 · 박수민

안상훈 · 김상훈 · 송언석

김예지 • 유용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 88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① 196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50
- 2. 2026년은 1천분의 55
- 3. 2027년은 1천분의 60
- ② 1975년생부터 1984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1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만분의 475
- 2. 2026년은 1만분의 500
- 3. 2027년은 1만분의 525
- 4. 2028년은 1만분의 550
- 5. 2029년은 1만분의 575
- 6. 2030년은 1만분의 600
- 7. 2031년은 1만분의 625
- ③ 1985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0만분의 4,665
- 2. 2026년은 10만분의 4,830
- 3. 2027년은 10만분의 4,995
- 4. 2028년은 10만분의 5,160
- 5. 2029년은 10만분의 5,325
- 6. 2030년은 10만분의 5,490
- 7. 2031년은 10만분의 5,655
- 8. 2032년은 10만분의 5,820

- 9. 2033년은 10만분의 5,985
- 10. 2034년은 10만분의 6,150
- 11. 2035년은 10만분의 6,315
- ④ 1995년생부터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9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0만분의 4,625
- 2. 2026년은 10만분의 4,750
- 3. 2027년은 10만분의 4,875
- 4. 2028년은 10만분의 5,000
- 5. 2029년은 10만분의 5,125
- 6. 2030년은 10만분의 5,250
- 7. 2031년은 10만분의 5,375
- 8. 2032년은 10만분의 5,500
- 9. 2033년은 10만분의 5,625
- 10. 2034년은 10만분의 5,750
- 11. 2035년은 10만분의 5,875
- 12. 2036년은 10만분의 6,000
- 13. 2037년은 10만분의 6,125
- 14. 2038년은 10만분의 6,250

15. 2039년은 10만분의 6,375

제3조(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① 196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100
- 2. 2026년은 1천분의 110
- 3. 2027년은 1천분의 120
- ② 1975년생부터 1984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1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95
- 2. 2026년은 1천분의 100
- 3. 2027년은 1천분의 105
- 4. 2028년은 1천분의 110
- 5. 2029년은 1천분의 115
- 6. 2030년은 1천분의 120
- 7. 2031년은 1천분의 125
- ③ 1985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만분의 933
- 2. 2026년은 1만분의 966
- 3. 2027년은 1만분의 999
- 4. 2028년은 1만분의 1,032
- 5. 2029년은 1만분의 1,065
- 6. 2030년은 1만분의 1,098
- 7. 2031년은 1만분의 1,131
- 8. 2032년은 1만분의 1,164
- 9. 2033년은 1만분의 1,197
- 10. 2034년은 1만분의 1,230
- 11. 2035년은 1만분의 1,263
- ④ 1995년생부터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9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만분의 925
- 2. 2026년은 1만분의 950
- 3. 2027년은 1만분의 975

- 4. 2028년은 1만분의 1,000
- 5. 2029년은 1만분의 1,025
- 6. 2030년은 1만분의 1,050
- 7. 2031년은 1만분의 1,075
- 8. 2032년은 1만분의 1,100
- 9. 2033년은 1만분의 1,125
- 10. 2034년은 1만분의 1,150
- 11. 2035년은 1만분의 1,175
- 12. 2036년은 1만분의 1,200
- 13. 2037년은 1만분의 1,225
- 14. 2038년은 1만분의 1,250
- 15. 2039년은 1만분의 1,275
- 제4조(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 터 2027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5년은 1천분의 100
 - 2. 2026년은 1천분의 110
 - 3. 2027년은 1천분의 12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③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			
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 에 해당	<u>1</u> 천분의 <u>65</u>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4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			
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			
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			
액의 <u>1천분의 90</u> 으로 한다.	<u>1천분의 130</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